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93
----------	-----

발의연월일 : 2009. 9.28.
발 의 자 : 노경수 의원
(찬성자 32인)

□ 제안이유

- 가. 인천대교 개통 예정(2009. 10. 23)에 따라 인천대교를 포함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영종·용유 등 지역주민의 이동 노선을 다양화하고,
- 나.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경차 사용을 권장하여 정부의 저탄소·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며,
- 다. 지원기간을 영종지역 내 인구 유입이 시작되어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영종 하늘도시 1차 입주 예정시기를 감안, 2013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려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에 “인천대교”가 추가됨에 따라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 나. 통행료의 기준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영업소)” 왕래시 납부하는 요금으로 하고, “서울 포함”조항을 삭제하여 확대 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
- 다. 지원대상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로 인천대교를 추가함.(안 제5조)
- 라.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통행료 납부 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 (1) 지원기준을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의 경우 1세대당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 (2) 1일 왕복1회 감면횟수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와 “인천대교” 중 한 곳으로 한함.
- (3) 감면대상차량이 인천대교를 통과 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 금액은 납부하도록 함.

마. 통행료 지원기간을 당초 2010년 3월 31일에서 영종하늘도시 입주 시기를 감안하여 2013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부칙제2항)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영종·용유지역 등 주민이 다음 각 호의 도로를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제1호의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
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제5조제1항 중 “주민등록을 필하고”를 “주민등록을 마치고”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또는 인천대교”로 하며, “주민이 소유하는 자가용 차량”을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가구”를 “1세대”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기량 1,000cc이하 경차의 경우 1세대당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감면횟수는 감면대상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인천국제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중 한 곳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면대상차량이 인천대교를 통과 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되는 요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통행료”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u>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영종·용유지역 등 주민이 <u>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북인천 IC (북인천영업소)</u>를 통과하여 인천(서울 포함)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u>인천광역시 공항공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u>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u>-----</p> <p>-----</p> <p>-----</p> <p>-----</p> <p>-----.</p> <p>제2조(정의) -----</p> <p>-----</p> <p><u>다음 각 호의 도로를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u> 말하며, 제1호의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p> <p>1. <u>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u></p> <p>2. <u>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u></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 대상) ① 인천광역시 중구(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 및 옹진군(북도면을 말한다)에 <u>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u></p> <p>② 제9조에 의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감면대상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u>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를 통과하는 주민이 소유하는 자가용 차량으로 한다.</u></p> <p>③ (생략)</p>	<p>제5조(지원 대상) ① ----- ----- ----- ----- <u>주민등록을 마치고</u> -----.</p> <p>② ----- ----- ----- ----- <u>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또는 인천대교를</u>----- <u>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 (지원 기준) ① <u>1가구에 차량 2대 이내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차량 1대에 대하여 4인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u></p> <p>② 감면횟수는 감면대상차량 1대당 1일 <u>왕복 1회로 한다. 이 경우 감</u></p>	<p>제6조(지원 기준) ① <u>1세대</u>----- ----- ----- --. <u>다만,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의 경우 1세대당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u></p> <p>② ----- --- <u>왕복 1회로 하며, 인천국제공</u></p>

현 행	개 정 안
<p>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신 설></p> <p>제9조(업무협약체결)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u>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u>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p> <p><u>부 칙</u></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u>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중 한 곳에</u>만 적용한다. -----.</p> <p>③ <u>감면대상차량이 인천대교를</u> 통과 할 경우 <u>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u>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되는 <u>요금은 납부하여야 한다.</u></p> <p>제9조(업무협약체결) ----- ----- -----<u>통행료</u>----- ----- -----.</p> <p><u>부 칙</u></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p> <p>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p><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5조(지원 대상) ○ 제6조(지원 기준) ○ 제9조(업무협약 체결) ○ 부칙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 별지 작성”</p>
관련조례 정비대상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관련자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공유재산관리)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 화장장(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소유지)·보(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개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계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화재예방과 소방

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영종·용유지역 등 주민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북인천 IC(북인천영업소)를 통과하여 인천(서울 포함)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인천광역시 중구(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 및 옹진군(북도면을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제9조에 의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감면대상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를 통과하는 주민이 소유하는 자가용 차량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1.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차적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
2.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3. 사업용(영업용 포함) 및 렌탈 차량

제6조(지원 기준) ① 1가구에 차량 2대 이내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차량 1대에 대하여 4인 이내로 한다.

② 감면횟수는 감면대상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한다. 이 경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협약체결)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